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3년 1월 일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이효석문학관 관리·운영인력 정원 3명의 증원승인과
- 2010동계올림픽유치지원팀 지원인력 4명과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보강인력 1명이 각각 한시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8인 증원하려는 것이며
-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2명의 한시정원이 기한연장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평창군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24인에서 8인이 증원된 "532"인으로 조정함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 515명 ⇒ 523명(증 8명)
- 나. 증원된 8인의 정원중 4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다만, 2003년 7월 2일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31까지로 함), 1인은 2005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 다. 한시정원 연장승인된 2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별첨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총수 "524명"을 "532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515명"을 "523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다만, 2003년 7월 2일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31까지), 1인은 2005년 12월31일까지, 2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52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15명</u></p> <p>2. 의회사무과의 정원 : 9명</p> <p>부 칙 제2조 <신 설></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532명</u>으로 ----- -----</p> <p>1. ----- : <u>523명</u></p> <p>2. (현행과 같음)</p> <p>부 칙 제2조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4인은 <u>2003년 12월 31일까지(다만 2003년 7월 2일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3년 7월 31까지), 1인은 2005년 12월31일까지, 2인은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⑤(생략)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④(생략)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989 /전송 033)249-4027
 자치행정과 과 장 : 이 우 식 조직관리담당 : 김 덕 태 담당자 최 증 석

문서번호 자치 12200--2333

시행일자 2002.12.10 ()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자치행정·총무과장

선 결	문 수	6037	지 시	
접 수	일 자		결 재 공 람	부 원 수
	시 간			최 정 석
	번 호	6037		발 행 장
처 리 과				김 덕 태
담 당 자		이우식		
심 사 자			심 사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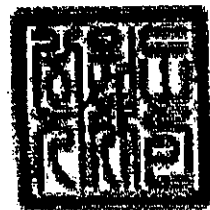
제 목 시군 신규시설에 대한 정원승인

1. 동해12200-1517호('02. 9.24), 평창12110-2185호('02. 9.26) 및 양구12200-2302호('02. 9.25)와 관련입니다

2. 동해시, 평창군, 양구군의 기구와 정원(한시정원 연장)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오니 자치법규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시고, 한시정원은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붙 입 :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동해시, 평창군, 양구군

정 원 승 인 서

《평창군》

기관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본 청 (문화관광과)		지방행정·전산주사보	1명	이효석
		지방기능(기계) 8급	1명	문학관
		지방기능(조무) 10급	1명	관리인력
합 계			3명	

※ 시 행 일 : 조례·규칙 공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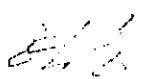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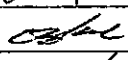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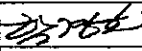
"1020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정보통신망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989 /전송 033)249-4027
 자치행정과 과 장 : 이 우 식 조직관리담당 : 김 탁 래 담당자 최 종 석

문서번호 자치 12200--2424
 시행일자 2002.12.21 (1년)
 공개여부 (공개)
 수 신 강원도 people
 참 조 강원도 평창군 자치행정과

선 진	군수		지 시	
접 수	일자	2002.12.23	절 재 · 공 람	
	시간	09:47:01		부군수
	번호	6198		
처 리 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	
담 당 자	이 우 식		자치행정	
심 사 자			심사일	

계 목 한시기구·정원 승인

1. 평창 자치12110-1901호(2002. 8.13)와 관련입니다
2. 2010동계올림픽 유치지원을 위한 한시기구·정원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자치법규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군민과 함께 2010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합시다"

정 원 승 인 서

기 관 명	직 위	직 급	정 원	비 고
평창군 2010동계올림픽 유치지원팀	팀 장	지방행정주사 지방토목주사보 지방건축서기 지방행정서기보	1명 1명 1명 1명	
합 계			4명	

※ 시 행 일 : 조례·규칙 공포일

※ 존속기한은 2003. 12. 31까지 임, 다만 2003. 7. 2.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3. 7.31까지 본 기구·정원을 폐지하는
 조건임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989 /전송 033)249-4027
 자치행정과 과 장 : 이 우 식 조직관리담당 : 김 덕 래 담당자 최 종 석

문서번호 자치 12200--2061

시행일자 2002.10.29 ()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선 결		강원도	지	
접 수	일자	2002.10.29	시	
	시간		결 재	
수 신	번호	5410	공 람	이우식
	처리과	자치행정과		
담 당 자		이우식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수해피해 항구복구를 위한 한시기구·정원 승인

1. 태풍 투사 수해피해의 항구복구를 위해 한시기구와 정원을 별지와 같이 승인하오니 조례·규칙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한시기구·정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2. 시군은 보강인력을 건설부서에 배치하여 강력한 수해복구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집행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정 원 승 인 서

《평창군》

기관명	직 급	정 원	비 고
본 청 건설과	지방토목주사보	1명	2005.12.31까지 시한부
합 계		1명	

※ 시 행 일 : 조례·규칙 공포일

- 수해복구전담인력으로서 건설과에 배치
- 한시기구·정원의 존속기한은 2005.12.31까지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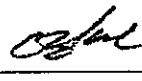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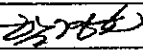
"2010 동계올림픽은 평창에서"

정보통신망

강 원 도

우 200-700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전화 033)249-2989 /전송 033)249-4027
 자치행정과 과 장 : 이 우 식 조직관리담당 : 김 덕 래 담당자 최 종 석

문서번호 자치 12200--2360
 시행일자 2002.12.13 (1년)
 공개여부 (비공개)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자치행정과장, 총무과장

선 결	자치행 정과장		지	
접 수	일자	2002.12.13	시	
	시간	13:41:24	결 개	
	번호	6085		
	처 리 과	자치행정과	공 람	
	담 당 자	이정의	자치행정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시군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

1. 행정자치부 자체 12200-737호(2002.12.1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정보화사업추진 인력(전
 산직)
 의 존속기한을 불입과 같이 연장 승인하니 자치법규개정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하기 바라며,

3. 현재 정보화추진 인력이 결원된 시군은 조속히 전산직 공무원을 채용하여
 정보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또한 전산직이 아닌 타직렬 또는 전산직과의 복
 수직렬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이번 자치법규 개정시 전산직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입 : 정원승인서 1부. **강 원 도 지**



수신처 : 티(01-18)

"군민과 함께 2010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합니다"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인력 정원승인서

시군별	계	6급	7급이하	비고
계	22	11	11	
동해시	2		2	
태백시	1		1	
홍천군	1	1		
횡성군	1	1		
영월군	1	1		
평창군	2	1	1	
정선군	1	1		
철원군	2	1	1	
화천군	3	1	2	
양구군	1	1		
인제군	2	1	1	
고성군	2	1	1	
양양군	3	1	2	

※ 시행일 : 조례·규칙 공포일

○ 존속기한은 2004. 6. 30까지임

○ 미충원 인원은 조속충원하고, 전산직외 타직렬과 복수직렬로 책정된 시군은 전산직으로 환원조치